

의안번호	2219391
의 퇴 인	이주희의원
회 답 일	2026. 7. 30.
추 계 번호	26C3024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(상담 과 전화 설치 등)	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화상담 업무를 전산화하고 효율적·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(이하 “전화상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함(제3항)	의무규정
		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음(제6항)	재량규정
2	안 제12조의3(위기청소년 모니터링) 신설	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·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모니터링(이하 “위기청소년 모니터링”이라 한다)하여 위기청소년 식별 등의 사업을 수행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조(상담 과 전화 설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조의3(위기청소년 모니터링) 신설	미대상: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“청소년상담1388 운영” 사업(2026년, 33억원) 기 실시 중 － 온라인 상담원(115명)이 365일 24시간 청소년에게 문자·채팅 상담 서비스 제공 및 SNS 게시글을 모니터링하여 위기 징후가 감지된 청소년에게 DM·댓글로 공감·도움 등을 제공하는 ‘사이버 아웃리치’ 진행 중

2. 상세 사유

□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12조)

-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전화상담 업무를 전산화하고 효율적·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

도록 규정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

-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, 2026년 ISMP 결과 관련 시스템 구축¹⁾을 위한 사업비는 약 47억 9,700만원(구축 개발비: 876백만원, HW·SW 구입: 3,327백만원, 감리 등 기타: 594백만원)이나,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부처와 적정한 예산 편성 규모를 심사 중으로서 현시점에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1) 사업내용: 청소년상담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(회선전환, 녹음, 대기안내·콜백, 상담이력·통계 관리 등) 구축, 긴급상황 3자(112, 119) 통화, 상담 후처리 자동화(상담종료 즉시 STT 요약본 자동 생성,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에 사례 자동 등록 등)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